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87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3.8.)」에 따라 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

1. 목적

-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2.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지정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충족여부 심사

○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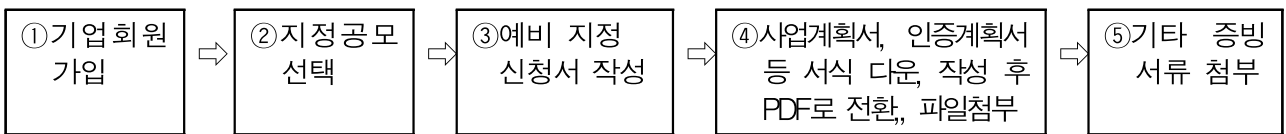


- 사전상담 및 컨설팅(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HUG도시재생지원기구)→지정심사(심사위원회)→지정·공고(국토교통부)
- 지정결과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지정결과 발표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별첨) 참고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9.4.(월) ~ 9.22.(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온라인 접수관련 문의 1661-4006)

4. 제출서류

- 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6호서식> 및 구비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⑤ 유급 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 ⑦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⑧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 정관·규약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 지자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5.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등 관련 문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별도첨부)
 - 지정신청서 접수 및 전산오류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기타 제도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044-201-4955)

[별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1부. 끝.

참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033-749-3950	gwse0524@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내선번호 1번)	pns@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7, 3층	055-266-7970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서비스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301호	053-956-5002	se@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내선번호 1번)	ses@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5층	053-956-5001	dg_secenter@cne.or.kr
대전 세종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042-624-6005	value@value-plus.kr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금강베네치아 211호	044-864-8676	
부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층	051-950-1231	jiu1028@dcb.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02-365-0330 (내선번호 2번)	jfse@daum.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	052-267-6176	ulsan@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내선번호 1번)	inseca@daum.net
전남	사회적협동조합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69, 3층	061-337-2110	jnsi23@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	063-213-2244	jbse2019@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내선번호 1번)	jejusen_secoop@jejuhub.org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 4층	041-415-2012 (내선번호 1번)	cnse1212@gmail.com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	043-222-9001 (내선번호 1번)	cbse@hanmail.net

[별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3. 8.



목 차

I. 총 칙	1
1. 추진배경	1
2. 목 적	1
3. 법적 근거	1
4. 용어의 정의	2
5. 운영주체별 역할	3
II.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6
1. 조직형태	6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7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8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9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10
III.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1
1. 지정절차도	11
2. 지정공모 및 접수	12
3.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4
4. 심사기준	16
5. 지정방법	18
6. 지정기간	18
7. 지정제한	19
8. 지정변경·취소·만료·반납 및 인증전환	20
IV.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관리	22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항	22
2.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23
3. 모니터링 실시	23
4. 지정현황 통보 및 관리	23
V.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24
[붙임] 관련서식	26

1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시행('07년)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시행('11년)
-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12년)

☞ 국토·교통과 관련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2 목적

-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함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민간위탁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함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한 권역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1.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수립·운영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선정 및 지정 취소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심사 시 해당 기업에 대한 실사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후 관리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취소, 지정만료 등 현황 관리 및 공유(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통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육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인증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단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추천

2.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전반 총괄 계획 수립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추천 운영지침 제·개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지원제도를 모두 적용하여 지원
 - 자치단체를 통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필요한 범위에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지방자치단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여부 심사 및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유관기관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지원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괄지원
 -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지침 제·개정 지원
 - 범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협업체계 운영
- 부처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심사 등 운영과 관리 지원
 - 지정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 절차 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지정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및 인증전환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지원
 - 부처별 산업특성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실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DB관리 및 현황보고(매월)

5.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후관리
 - 신청 상담,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 지원
 - 지정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및 인증전환을 위한 상시컨설팅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지원
 - 부처별 산업특성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 외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1) 「민법」상 법인·조합
 - 2) 「상법」상 회사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10)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고용노동부 인증지침 준용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및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 ◆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 ◆ 제시된 분야 외 기타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예시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준용)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기준표 >

구 분	조직의 주된 목적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창의·혁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 또는 추가인력 고용
-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등)
 -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없음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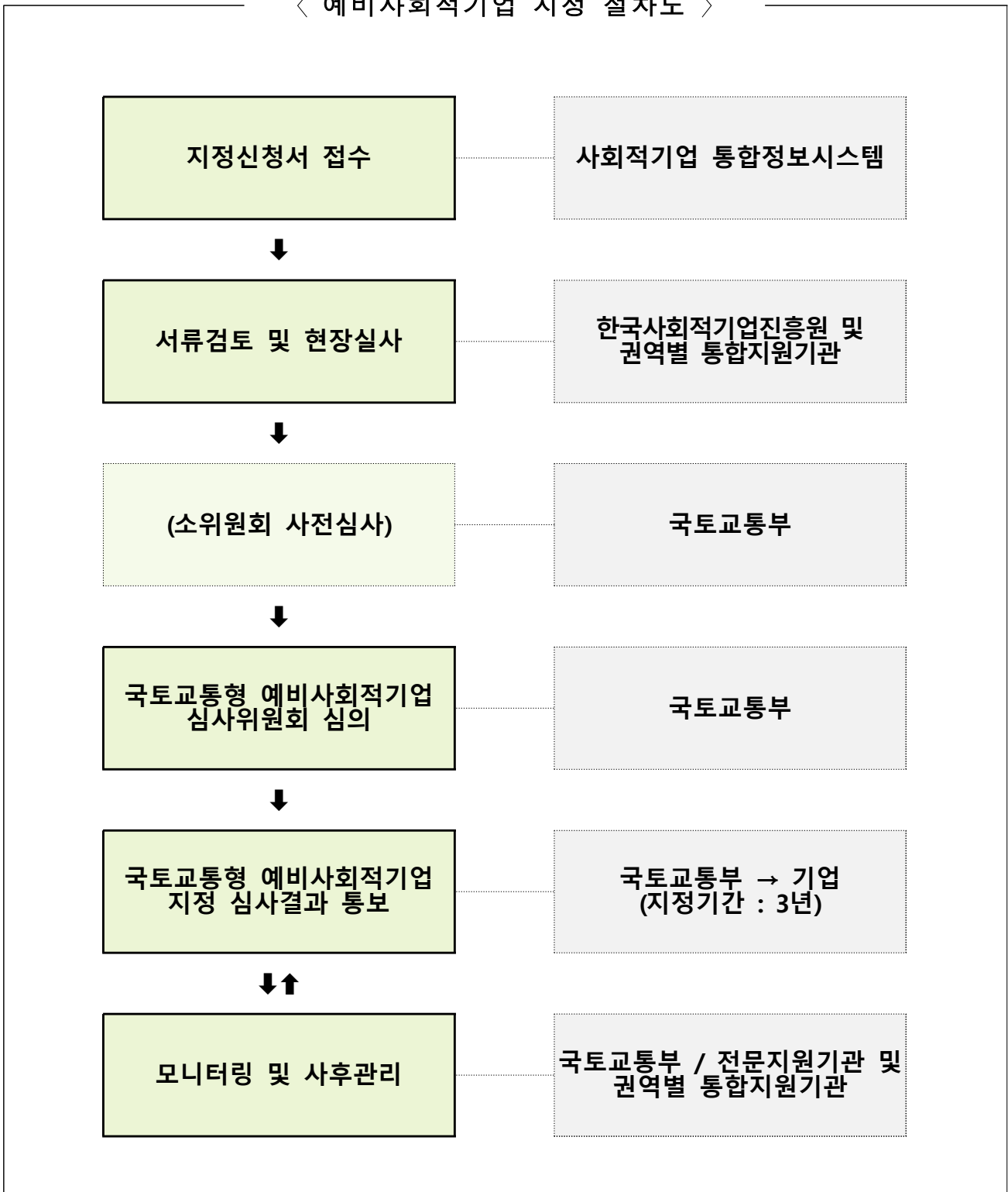
III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지정절차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2

지정공모 및 접수

- (공모방법)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공모시기 및 횟수) 연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 및 접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파일명은 “연번-기관명-유형명-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으로 저장

구분 \ 유형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관련서류	필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2.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유급고용 관련서류	해당시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2.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3.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 4. 임금대장/급여명세서 5.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영업활동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2.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공통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필수) 2.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해당 시) 3.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하단 구비서류(해당 시)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신청 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기타	해당시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4.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필수	1.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필수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필수	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장 1인(국토교통부 국장급)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
 - 위원은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예비)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나. 심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사위원회 운영

- (회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심사 원칙

- (제척·기피·회피) 심사위원 중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관계자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
-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임의적 운영사항)

- (구성) 심사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전문가, 사회적기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임명 또는 위촉(5인 이상), 소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정함
 - ※ 사전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2인 이상 포함
- (기능) 사전심사 등 심사위원회 심의 지원
 - 소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가능
- (운영)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방식, 의사 및 의결정족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심사기준

가. 지정 요건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요건 충족여부 심사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취약계층 고용 외에도 이윤배분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의 우수성, 문제해결 수단의 창의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정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지자체나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 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적정

라.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여부

마. 기타

항목	세부심사내용
사회적 가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의 명확성 - 사업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가치 창출 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매출 계획 및 규모 등 경제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수익금의 사회적목적 등 사회적 가치창출계획 혹은 창출내용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 개념 및 내용 명확화 - 비즈니스 모델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운영 프로세스, 자원확보 방안 등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분석, 벤치마킹, 타사와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 분석의 적합성 등
사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의 적합성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사업장 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기업의 사업장이 자택이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장 없거나 공유사업장을 활용하는 경우는 지정할 수 있음
근로자 미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외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매출 미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매출이 없더라도 시제품을 개발하여 사업수행 전단계로 추진중인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매출 관련 MOU 등을 통해 장래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음

5 지정방법

- (지정규모) 심사위원장이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결과공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는 국토교통부 관련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 (지정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6 지정기간

- (지정기간) 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 △ : 유사사업 참여기간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 기업 A, 기업 B, 기업 C와 같이 1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 기업 D, 기업 E와 같이 2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7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시) '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신청하여 탈락하였고, 그 이듬해 '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12월까지 신청제한, '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 / 분할된 경우 :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지정변경)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1)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조직형태 변경,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포함),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 (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2)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위 신고사항 이외의 주된 사업내용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서면심사 가능)하여 통보
-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지정취소)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인증지침 준용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단,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거쳐 이행
 -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가능
 - * 폐업, 도산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가능
- (지정반납)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지정만료)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항

- (공통) 재정지원사항 등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국토부 지원) 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실행을 위한 HUG 보증심사 시 가점(5점) 부여, 한도상향(총사업비의 70→80%) 및 금리우대(1.2~1.5%)

* 도시재생사업지 내 공동협업공간, 창업공간, 상가리모델링, 임대상가 조성 등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HUG 대표전화 1566-9009)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개요>

- (목적) 쇠퇴한 도시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일자리 창출·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동이용시설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는 개인·공공기관·사회적기업 등에 융자 지원(17.9월~)
- (조건) 총사업비 70~80% 이내(50억원 미만, 공공은 100억 미만)에서 7년간(연장 시 12년까지), 연 1.2~1.9% 이율*로 융자
- * (기본 금리) 개인·법인 : 1.9% 공공·사회적경제주체 : 1.5%
단, 공공성(착한임대인, 사회적약자 고용)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1.2%까지 우대

종류	한도	이율	비고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증·감액 가능	(개인/일반법인) 연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개인,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상가리모델링 자금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상가소유자, 상가신축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 (융자용도) 상가 리모델링·신축
창업시설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8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감액 가능	* 금리 우대 기준에 따라 최대 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 ▪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임대상가 조성자금		**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생활SOC 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 증·감액 가능	연 1.5% * 금리 우대 기준에 따라 최대 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대상) 생활SOC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융자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

2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 교육 실시
 - (교육시기/방법) 상·하반기 각 1회 / 기본 4시간 이상 실시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 지원기관 등과 협조

3 모니터링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협조를 얻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지정요건의 유지 여부, 사업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 확인
- 모니터링 실시결과, 경영역량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안내하고, 지정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지정 취소

4 지정현황 통보 및 관리

- (지정현황 통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 등 변경사항 포함)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기초자치단체에 문서로 통보
- (지정현황 관리)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은 지정 현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V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1

목적

- 중앙부처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

2

추천대상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인증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3

추천절차

- (신청기관 명단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기업 명단을 작성하여 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신청기관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송부
- (인증추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업을 결정(서면심의 가능)
 - 인증추천이 결정된 기업에 대한 인증 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일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제출
- (재추천)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재신청한 때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음

4

인증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특례

-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현장실사 일정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함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 (예시)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회목적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증 추천받은 기업은 완화하여 적용 등
 -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에 따름

붙임

관련 서식 (※추가 서식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참고)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e-mail.)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가[], 나[], 다[])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여부		
⑫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산림 보전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가사 간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 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2. 기타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규약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p>3. 사업 역량</p>	<p>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p> <p>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p> <p>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p>
<p>4. 사업 목표</p>	<p>4-1 연차별 매출규모</p> <p>4-2 고용창출 계획</p> <p>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p> <p>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p>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p>1년차</p>	<p>(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p>
<p>2년차</p>	<p>(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p>
<p>3년차</p>	<p>(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p>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㉔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 취약 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1		
2								
수 혜 자		1						
		2						
		3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㉕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㉖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1		
	2		
	3		
	4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국토교통부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 청 기 관 명			
대 표 자		유급 근로자 수	
(주 된 사 무 소)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지 정 일		지 정 번 호	
지 정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반 납 유 형	<input type="checkbox"/>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반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사업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변경[]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기타[]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민간 지원	소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환경[] 간병·가사지원[] 산림 [] 고용[] 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일반인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 방자 치단 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4. (붙임)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p>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 금	근로시 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예시)

※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추진 및 작성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획	사업추진실적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계획 목표 및 내용	주요사업내용: 예시) 장애인(학생)을 대상 직업훈련 교육, 커피전문점 운영, 음료 및 간식 제조 판매, 장애인고용 컨설팅	주요사업내용 : 지정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 비 1년차 추진내용 작성 예시) 장애인학생 대상 직 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 발(2개) 및 교육진행(총 12회), 커피전문점 오픈		
사회적목적 유형(실현)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공헌형(가, 나, 다)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예시) 전체 사회서비 스 중 일부 사회서비 스 제공(약 10%), 사 회서비스 실적 산정기 준 확인후 증빙을 받 음 ※ 유형별 인증요건 충 족기준 확인필요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 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예시) 주식회사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정관에 의사결정구조 명시, 연 2회 이사회 운영	예시) 정관에 의사결정 구조 명시, 회의체 구 성,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협동조합으로 운영위원 회 운영		
정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필수사항 예시)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용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등 사항	예시) 정관에 의사결 정 구조 명시(이사회, 운영위원회), 외부 이 해관계자 참여 회의 (회의록 작성) 협동조합으로 운영위 원회 운영		
사업기반 확보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사업기반(관련 사업계약 등)			
인증전환 애로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